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의자 : 정준호 · 이연희 · 임미애  
임호선 · 채현일 · 문진석  
복기왕 · 양부남 · 이건태  
김준혁 · 최혁진 · 염태영  
강준현 · 이재정 · 손명수  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,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

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,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,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)”으로 한다.

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의4(수도권 외의 연구기관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연구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

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,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
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.

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「소득 세법」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.

### ③ · ④ (생략)

### <신 설>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100분의 50(수도권 외  
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  
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분  
의 30)

###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63조의4(수도권 외의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연구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

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

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,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
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.

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